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072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병원의 명칭을 보다 친근감이 가고 지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제천정신병원에서 동종의 병원을 개원하면서 "제천노인전문병원"이란 명칭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및 내용중 병원 명칭을 개정
-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으로 개정

3.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5조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7796호]
○ 의 료 법 제30조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7453호]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붙 임 : 1.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발췌분) 1부.
4.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을"청풍호 노인사랑병원"으로 한다.

제1조중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하 "노인사랑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노인사랑병원"으로 한다.

제3조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노인사랑병원"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노인사랑병원"으로 한다.

제5조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노인사랑병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및 동조 제7호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을"노인사랑병원" 으로 한다.

제9조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노인사랑병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항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노인사랑병원"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노인사랑병원"으로 한다.

제13조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노인사랑병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노인 및 치매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35조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하 "노인사랑병원"이라 한다)---------- ---------- ----------.
제2조(위치)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제천시 지역내에 둔다.	제2조(위치) 노인사랑병원---------- ----------.
제3조(업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3. (생략)	제3조(업무) 노인사랑병원---------- ----------. 1. - 3. (생략)
제4조 (설치·운영) ①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	제4조 (설치·운영) ①---------- ---------- 노인사랑병원---------- ---------- ---------- ----------. ②노인사랑병원---------- ---------- ----------. ③----------노인사랑병원---- ---------- ---------- ---------- . ④노인사랑병원 ---------- ----------

현 행	개정안
야 한다. 다만, 시장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생략)	----------노인사랑병원------- ---------- ---------- ---------- ----------. ⑤ ---------- ---------- 노인사랑병원---------- ----------. ⑥(현행과 같음)
제5조(수탁자의 자격)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1. - 2. (생략)	제5조(수탁자의 자격) 노인사랑병원---- ---------- ----------노인사랑병원 ---------- ----------.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규정)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요양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6.(생략) 7. 기타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관리규정) 노인사랑병원---------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노인사랑병원 ---------- ----------
제9조(기록의 정리)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9조(기록의 정리) 노인사랑병원------ ----------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확장한 경우 확장 및 취득된 재산은 시에 귀속되고,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 받을 수 있다. ③-④(생략)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노인사랑병원----------. ②----- 노인사랑병원----------. ③-④(현행과 같음)
제12조(보고와 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2조(보고와 감독) ①----------노인사랑병원----------. ②(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3조(위탁의 취소) ①----------노인사랑병원 --------. 1.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7796호]

제135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의 료 법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7453호]

제30조(개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 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5.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서번호	보건위생과-ON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06. 1. 20

★지방보건주사보	보건행정담당	보건위생과장	소장	부시장	시장

협조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	

가칭 제천노인전문요양병원 명칭 선정(안)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가칭 제천노인전문요양병원 명칭 선정

< 경 위 >

○ 당초 금성면 구룡리에 건립한 병원 명칭을 "제천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선정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천남동 소재 제천정신병원에서 2005. 12. 29일 동종의 병원을 개원하면서 먼저 명칭을 사용 등록함에 따라

○ 개원이 늦은 시립병원 명칭을 부득이 변경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 명칭 안 선정 방법

○ 1차 : 제천시 토론회를 통한 명칭(안) 공모

○ 2차 : 보건소에서 다수 공모 안 축소 선발

○ 3차 : 축소 안 결심과정에서 최종 선정

□ 명칭 안 공모결과

○ 2005. 12. 30 : 토론회 주제 선정요청(기획감사실)

※ 2006. 01. 09 각 실과 토론회 실시

○ 2006. 01. 17 : 토론회 결과 통보(보건소)

※ 총 58개 명칭접수 : 별첨 참고

○ 2006. 01. 18 : 다수 명칭(안) 보건소 의견수렴 축소 선발

※ 7개로 축소 선발

□ 웅포 현대병원 요구

○ 병원 운영의 효과 거양을 위해 가능한"요양"이란 단어를 제외하고 인터넷 검색에 용이한"노인"이란 단어를 반드시 삽입 요망

□ 축소 선발된 명칭 안

번호	명 칭	선 호 도	비고
1안	청풍호반노인사랑병원	T	주간토론회 공모(안)
2안	청풍명월노인요양병원		"
3안	제천참사랑노인전문병원		"
4안	청풍호반노인전문병원		"
(5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T	✓ "
6안	어르신전문요양제천병원		"
7안	제천현대노인병원		현대병원(안)

□ 주관부서의견

○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청풍호와 뛰어난 자연경관을 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친근감이 있고 토론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을 가칭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공식명칭으로 선정 하고자함.

□ 향후계획

○ 현판 제작

○ 위탁운영 계약 체결

○ 병원개원 홍보

○ 조례 변경 절차이행

제천시공고 제 2006-316 호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1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병원의 명칭을 보다 친근감이 가고 지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제천정신병원에서 동종의 병원을 개원하면서 "제천노인전문병원"이란 명칭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및 내용중 병원 명칭을 개정

•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으로 개정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1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 640-4003, FAX 640-587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